

2025년도 국내 산·연 극지공동연구프로그램 사업(PIP) 신규과제 공모

극지연구소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및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의 극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극지역에서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극지연구 수행 간 필요한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산·연 극지공동연구프로그램 사업(Polar Industrial Program, 이하 ‘PIP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극지 연안 관측용 무인선박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과제를 공모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극지연구소장

I . 과제개요

목적

- 국내 산·연 공동으로 극지연구 수행 간 필요한 장비 및 기술 개발
 - 극지 연안 관측용 무인선박 개발
- * 과제 상세 내용은 별첨1.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기간 및 규모

구 분	1차년도	전체년도
연구기간	1년 이내	협약일 ~ '26.12.31.
연구비	150백만원 이내	350백만원 이내

* 과제수행 간 중간진도점검 및 연차평가 (2차년도 계속 수행여부 및 연구비 확정), 최종 종료평가 실시

** 극지 현장 테스트 필요 시, 연구기간 내 포함되도록 하며 추후 연구기간 연장 지양

※ 2025/26년 남극 하계활동 및 아라온 승선 가능 여부는 수요조사 예정이나 소내 사정으로 출장 지역 및 일수가 제한될 수 있음

사업 선정 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25. 7. 4.限)	선정평가(연구기획위원회) ('25. 7월 중) * 상세내용 별첨 2. 참조	계획서 수정·보완('25. 7월 중) 및 사업 착수('25. 8월)
--------------------------------------	---	--

II. 신청자격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기업-연구기관 컨소시엄 : 컨소시엄으로 지원한 두 기관 모두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함

III.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5. 6. 9.(월) ~ '25. 7. 8.(화) 18:00 도착 분

신청방법

제출 방법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별첨 3), 연구수행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별첨 4), 신청자격 확인서(별첨 6)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확인 후, 우편 제출(소속기관장 제출 공문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 및 공문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임

제출서류

- ① 소속기관장 공문(직인 날인)
- ② 연구개발계획서(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및 연구수행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③ 신청자격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재무제표

접수처

-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26 극지연구소 본관동 1803호
연구사업관리실 이재춘
- 담당자 연락처 : 032-770-8622, jclee@kopri.re.kr

□ 기 타

- 접수된 문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극지연구소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됨
-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극지연구소의 유권해석에 따름

IV. 신청 제외사항

□ 사업 신청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기간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마감일까지 제재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신청 불가)
- ②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③ 국세, 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선정평가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제외)
- ④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경우는 예외)
- ⑤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선정 이후라도 상기 신청 제외 사항에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별 첨

- #1. 과제 제안요구서(RFP)
- #2.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획
- #3. PIP사업 연구비 사용·관리 및 정산 세부기준
- #4. [양식] PIP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 #5. [양식] 연구수행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6. [양식] 신청자격 확인서

별첨 1**과제 제안요구서(RFP)**

세부사업	2025년 PIP 사업	기술분야	극지 공학
과제명	극지 연안 관측용 무인선박 개발		
연구기간 (당해/총)	1년 이내 / 협약일~'26.12.31	예상연구비 (당해/총)	150백만원 이내 / 350백만원 이내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극지 연구의 중요성

- 극지 환경 조사 자료는 해빙, 빙붕 붕괴, 대류 순환, 탄소 흡수등 지구 기후 시스템을 파악하고, 전 지구적 기후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필수적임
- 극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자율운항체, 에너지 시스템, 극저온 통신 기술 등은 극지 연구를 통해 개발·검증되며, 향후 우주, 심해, 극지 산업 등으로 기술이 확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시험장으로써 의미가 있음

 극지 연안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인 조사 체계 부재

- 국외의 경우, 극지 해양 연구를 위한 자율 수면 무인 선박(ASV) 개발을 활성화하여 자율 항법 및 원격 조정 기능을 통하여 강한 해류에서도 정밀 조사가 가능
- 또한 다양한 센서(ADCP, 멀티빔, CTD, 레이저 기반 가스 분석기 등)를 통하여 그린란드 빙하 앞에서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위험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
- 국내의 경우, 무인 해양 관측 플랫폼을 개발 및 도입하여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극지에서의 활용사례가 많지 않음

 극지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무인 해양 관측 플랫폼 개발 및 활용 필요

- 현재 극지 해양 환경은 혹한, 고파도, 해빙 등의 영향으로 인해 유인 선박을 통한 장기적인 해양 관측 및 연구가 어렵고 위험 요소가 많음.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자율적으로 운항하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과학 무인선(Autonomous Surface Vehicle, ASV) 기술의 확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임
- 고위험 환경에 적합한 ASV를 개발 및 도입하여 원격 조종 또는 자율 항해 시스템을 통하여 위험 지역 조사 관측 수행이 필요함

- 또한 과학 무인선(ASV) 조사를 기반으로 해양 환경(해수 온도, 염분, 해류, 생물 군집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기후 변화 예측 정확도를 높여 급격한 온난화로 인한 기지 주변 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함.

나. 연구개발 현황 및 수준

(1) 국내 연구개발 현황

- 무인 해양관측 플랫폼 개발 및 도입하여 활용 중
(극지에서 활용은 없음)

(2) 국외 연구개발 현황

□ WHOI Jettyak

- WHOI(우즈홀 해양연구소)의 Jettyak은 극지 해양 연구를 위한 자율 수면 무인선박(ASV)으로 개발 됨
- 길이 3.35m, 무게 135kg의 작은 크기이며, 가솔린 엔진 기반의 고속 추진 (5.5 m/s) 가능
- GPS 기반 자율 항법 및 원격 조종 기능을 통해 강한 해류에서도 정밀한 조사가 가능
- 다양한 센서(ADCP, 멀티빔 소나, CTD)를 탑재하여 빙하 근처 해양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활용되며, 연구팀이 직접 설계하고 개조하여 낮은 비용(약 15,000달러)으로 운용 가능
- 실제 연구에서는 그린란드 빙하 앞에서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며 위험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

□ ChemYak

- ChemYak은 WHOI에서 개발한 자율 수면 무인선박(ASV)으로, 주로 메탄 방출 연구를 위해 설계 됨
- 기존 Jettyak을 개량하여 레이저 기반 가스 분석기 및 멀티빔 음향 센서를 추가. 미세한 공간적 해상도로 메탄 방출량을 측정하여 기존 연구 대비 데이터 정확성을 높였으며, 오리건 연안 및 캐스캐디아 해역에서 메탄 방출 지점을 탐색하는 데 활용

(3) 국내 기술 수준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장기간 해양 탐사를 위한 무인선 개발 및 운용
 - 자율 운항 기능 : Pixhawk를 이용한 자율운항 기능, 경로작업 가능
 - 반경 수십 km 이동 : 배터리와 발전기를 Hybrid로 사용. 12시간 이상 운항 가능
 - LTE 통신을 이용하여 작업 반경 넓음
 - 무인 CTD 관측 : 조사원 장비에 CTD 관측 가능
 - 음향탐사 기능 : Multibeam이 장착되어 해저 지형 탐사 가능

다.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1) 최종목표

- 저온환경, 유빙 및 장애물 감지·회피 등 극지환경에서 자율 항법 시스템과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사계절 안정적인 운용과 해양 환경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극지 연안 관측용 무인 선박 개발”

□ 최종성과물

- 극지 연안 관측용 무인선박 1기 (상세 내용은 주요연구내용과 성과지표 참조)
 - 극한 과학 기지 연안해역환경에서 정기적으로 해양 환경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 가능한 선체 및 구조
 - 선박 및 관측 센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
 - 해양 환경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합 기상 관측 센서 탑재

(2) 주요연구내용

□ 극지 운항 최적화 플랫폼 설계

- 재질 : 해양용 알루미늄 합금 및 강화 복합 소재
- 크기^{*} : 길이 × 폭 × 높이(3.0 m × 1.25m × 0.6 m) 혹은 유사한 크기
- 내빙 설계 : 유빙 충돌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강화
- 중량^{*} : 1 ton 이하

* 세종기지 포크레인(두산 DX300LC-5K 기준)으로 진수가 가능한 크기 및 무게

□ 추진 시스템

- 추진방식 : 약 5.5kW Elec. Mortors ×1 혹은 동급 사양
- 속도 : 일반 운항 최대 속도 5knots
- 배터리 : abt. 15kW class li-ion battery 또는 동급 사양
- 연속운영 시간 (관측기준) : 5시간 이상

□ 자율 항해 및 원격제어 기술 개발

- 자율 항법 시스템 : 자동 이동 경로 생성 및 유빙 등 이상체 회피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
- 원격제어 : 2.4GHz RC 조종기 및 수신기(FRsky X9D 송신기, L9R 수신기) 이상을 사용하여 원거리(2km 이내)에서 무인기에 설치된 관측 장비 운영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
- 통신 시스템 : 기상조건 및 통신거리를 감안하여 이중체계로 구성. 향후 위성 통신 및 전용 시리얼 라디오를 통한 데이터 전송 및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신 두절 등 비상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제작

□ 극지 해양 및 대기 통합 센서 모듈 탑재 및 관측 시스템

- 해양 기상 센서 : 실시간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상대 습도 측정(heating 기능)
 - 기온 측정 범위 : -40 ~ +30°C (Resolution 0.1 °C) 혹은 그 이상
 - 풍향 측정 범위 : 0 ~ 360° (Resolution 1°)
 - 풍속 측정 범위 : 0 ~ 60m/s (Resolution 0.01 m/s) 혹은 그 이상
 - 기압 측정 범위 : 800 to 1250 hPa (Resolution 0.1 hPa) 혹은 그 이상
 - 상대 습도 측정 범위 : 0 ~ 100%
- 수온, 염분, 형광도, pH, 용존산소 센서 설치 공간 확보
(향후 우선적으로 설치 예정; 보유 센서를 활용 하되 필요시 도입)
- 자동 원치 시스템 : 향후, 자동/원격으로 해양 환경 관측(충별 전기전도도, 수온)용 자동 원치 시스템이 설치 가능하도록 구조물 제작 및 설치(최대 200m까지 profiling)
- 센서관측 자료의 검증을 위한 현장 해수의 채집 장치 설치
- 관성 항법 장치 : 발주처에서 보유 중인 관성항법 장치를 연동하여 위치 자료를 저장 및 위치 자료를 요하는 관측 센서에 입력 가능하도록 구조물을

형상화하고 자료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축함

- 멀티빔 음향 측심기 : 발주처에서 보유중인 멀티빔 음향 측심기를 통한 해저 지형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데이터 수집 및 저장

- 데이터 로거 : 관측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전송 기능 구현
 - PCB Board, SBC, 각종 커넥터(전원, 디버그, 센서포트, USB) 구성
 - 12V/24VDC 전원공급
 - 외부 센서 연결용(RS232,422,485) 인터페이스 제공
 - 이리듐 위성통신 및 내장 LTE 안테나 커넥터 지원
 - 외부 저장 USB 메모리 지원
- 저장 용량 : 장기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용량 저장 시스템

□ 안전 및 복구 시스템

- 누수 알람기능을 구축하여 침수 전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위치 추적시스템 : 위성 Tracker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 추적
- 회수 장치 : 안전한 회수를 위한 4점 인양 방식 구축
- 무인선박의 안전 보관 및 이동을 위한 구조물 제작

□ 성능 검증 시험

- 해역 운용 테스트
 - 테스트 구역(100m×100m)내 5km 이상 주행 및 운용
 - 해류 속도 0.5m/s 이상에서 추진 성능
 - 수상 장애물 회피기능 확인(자동경로 생성)
 - 관측시스템 및 데이터 수집(센서 관측자료 저장확인)
 - 현장 운영 및 제어 장치 교육
 - : 장비 운영 및 관리 교육
 - : 추진 및 제어 장치 운영 교육
- 장비 관리 운영 매뉴얼
 - Trouble shooting guide, operating manual 등

라. 성과지표

구분	지표	목표치
선박 규격	재질	해양용 알루미늄 합금 및 강화 복합소재/유빙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선수 구조 강화
	크기 및 중량	길이 × 폭 × 높이(3.0 m × 1.25m × 0.6 m)/1 ton 이하
추진시스템	추진 방식	전기추진체 5.5 kW 동등 이상
	속도	선속(최대): 5 knots 이상
	연속 운영시간	5시간 이상
자율/원격 제어	자율항법 시스템	자동 이동 경로 생성, 이상체 자율회피 기능
	원격제어	2 km 이내 관측 장비 운용 제어 가능
	통신 시스템	기상 및 통신 거리 감안 이중체계 구성 비상 상황에 대처 기능
관측 시스템	기상 센서	연구내용 동등 수준 이상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데이터 로거	실시간 수집 및 전송 기능
	저장 용량	2 TB 이상 HDD
안전 및 복구 시스템	누수 알림	누수시 작업자에게 실시간 알람 기능
	위치 추적	위성 Tracker 설치 및 운용
	회수 장치	4점 인양 방식 구축
실증	해역 운용 테스트	현장 운영 및 제어 장치 교육
	메뉴얼	Trouble shooting, operating

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극지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고정밀 관측 데이터 확보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인 관측을 통해 기존 유인 연구 방식의 한계를 극복
 - 마리안 소만 및 멕스웰베이의 수온, 염분, 해류 뿐만 아니라 해양의 생지화학 변동 및 해양산성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후 변화 연구에 활용
 - 극지연안환경을 무인선박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격한 온난화로 인한 기지 주변의 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감시 및 보고
 - 선박을 활용한 관측이 제한적이고 관측자료가 극히 부족한 극지해양의 동계 (가을 ~ 봄) 환경 관측 자료를 확보
- 극지 자율무인기술 국산화 및 기술 자립 기반 확보
 - 핵심 자율운항, 통신, 에너지 관리 기술의 독자적 확보
 - 극한 환경용 무인 기술력 고도화 추진
- 다학제적 극지 연구 활성화 및 국제 공동 연구 기반 조성
 - 해양, 기상, 대기, 지형 맵핑 및 안전 항로 설정등 통합 연구 인프라로

활용 가능

- 극지 연구 선진국과의 공동 탐사 및 데이터 공유 가능성 확대
- 극지 장기 해양 관측 플랫폼으로 활용
 - 남극 장보고/세종 기지 인근 해역, 북극 빙하 인근 등 극지 현장에 배치
 - 연중 무인 운영으로 데이터 공백 최소화
- 기후변화 감시 및 국가 해양안보 전략에 활용
 - 해양기후 이상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
 - 국경 해역 감시, 자원 탐사 등 전략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 가능

별첨 2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획

□ 평가개요

- 일시 / 장소 : 2025년 7월 중 / 극지연구소
- 주관 : 연구·기획위원회
- 방법
 - 신청 과제별 연구책임자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 발표자료 (PPT 자율양식 / 평가지표 고려하여 작성)
 - 평가결과 70점 이상과제 중 최고점 1개 과제 선정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점수 (○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연구 개발 목표, 내용 및 추진 전략 (7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RFP(개발장비 사양)와의 적합성	20	16	12	8	4
		◦ 연구결과물(장비 및 기술 개발)의 적절성	20	16	12	8	4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	◦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10	8	6	4	2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 사업비 편성의 합리성	10	8	6	4	2
연구 책임자 역량 (30)	연구책임자 및 핵심참여 연구원 역량	◦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책임자 및 핵심 참여 연구원의 역량	15	12	9	6	3
		◦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역량	15	12	9	6	3
합계			100	80	60	40	20

I. 목적

- 이 세부지침은 '극지 산·연 공동연구프로그램(PIP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및 정산 세부기준

1. 사후환급세금

-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협약변경

- 연구기간, 연구내용(최종 목표), 연구비 변경 등 협약변경시에는 극지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극지연구소장의 승인기준일까지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사유발생일 이전에 원인행위된 연구비 집행건은 인정할 수 있다.
 - 승인기준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승인기준일은 승인문서의 시행일로 본다.

3. 사용실적보고 관련서류

- 연구비 사용명세서

4. 집행 잔액 미 입금시 조치사항 및 가산금 등 징수

- 극지연구소(이하 주관연구기관)는 집행잔액 확정 및 반납통보(납부기한 명시) 후 PIP사업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소명(동일내용에 대한 동일소명의 경우 제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행잔액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 및 "가산금을 포함한 반납금액"을 명시하여 "독촉"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독촉장 발부 후 해당기관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기한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 및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반납금액"을 명시하여 "납부최고"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집행잔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집행 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납된 집행잔액이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독촉공문의 내용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부처 통보, 신용조사기관 및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 간접비율 제재 등)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5. 기타사항

- 연구계획서에 연구개발비가 산정기준 대비 부당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해당금액 및 이에 연동하는 간접비, 연구활동비 등의 과다 산정금액을 회수한다.

III. 비목별 세부기준

1. 간접비

- 비영리기관은 협약연도의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산출하며, 이때 총 연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수행기관의 장은 간접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보관·유지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간접비는 당초 협약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2. 직접비

가. 내부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기관 총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경우,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계상률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 교수 및 소속연구원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인정

나. 외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으로 과제참여에 따라 실비 적용)

- 연구수행기관의 장은 외부인건비 지급시 연구비계좌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수령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 외부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달리 해당기관이 흡수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내부인건비와 명확히 계정을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타기관에 소속된 인력(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연구원 등)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경우(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포함) 불인정한다.
-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변경)되어 집행된 인건비는 대체(변경) 필요성이 명시된 관련 서류 미비시 해당연구원의 인건비는 회수한다.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법정수당 및 부담금(예 : 퇴직금충당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당해과제에 계상·지급할 수 있다.

다.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및 운반용 차량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협약변경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 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라. 연구활동비

- 연구수행기관의 장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가초청 자문비를 집행할 경우,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국외전문가 활용의 경우는 항공료, 체재비 지급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가 활용은 연구수행의 목적상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 하는 외부의 비참여 연구원의 활용을 말하며,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를 전문가 활용비로 활용할 수 있다.
 -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 학회활동의 경우 당해 과제와 관련있는 참가비, 연회비, 가입비에 한하여 인정되며 종신학회비는 불인정 한다.
- 회의비는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로서, 당해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회의비는 총 직접비(내부인건비제외)의 1.7% 이내로 계상하고 증액변경은 불인정한다.
- 특근식대는 식권 구매가 가능하나, 야근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1인 1매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식대 일괄 결제 불인정)

마. 여 비

- 여비의 집행은 기본적으로 연구수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여비 집행은 소정의 품의질차를 거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장품의서에는 연구관련 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관련 목적 등의 증빙이 미비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회수한다.
- 출장 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당초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연구활동비의 잔액을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사.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명합(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신문구독, 세차비, 주유비, 공인회계사수수료 등 집행시 불인정한다.

아. 기타

- 본 집행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별첨 4

[양식] PIP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명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실용화 / 비실용화 중 선택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M·Y)								
년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참여기업(해당시)	기업명		연구비(현금/현물)			기타		
국제공동연구(해당시)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극지연구소장 귀하								

〈 요약문 〉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중심어			

※ 반드시 한 장 이내로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휴대전화	
	한문			E-mail	
직장	주소	우편번호			전화
					FAX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

(2) 학력사항

연도		학력			학위 ^(주)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최종학위논문제목					

* 학위(택1) :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고
YYYY	YYYY			
YYYY	YYYY			

(4)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YYYY		
YYYY		

(5) 국내외 학(협)회 활동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YYYY	YYYY		
YYYY	YYYY		

(6) 대표적 연구개발 실적

번호	실적 내용
1	
2	
3	

(7) 대표적 연구개발 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국가)	참여시작일	총연구비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주)	참여종료일	참여율
1			yyyy.mm.dd	
			yyyy.mm.dd	
2			yyyy.mm.dd	
			yyyy.mm.dd	
3			yyyy.mm.dd	
			yyyy.mm.dd	
4			yyyy.mm.dd	
			yyyy.mm.dd	
5			yyyy.mm.dd	
			yyyy.mm.dd	

*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한 대표적 연구수행 과제를 5건 이내 기재

* 참여유형 (택1) : 연구책임, 공동연구, 참여연구 중 선택

- **연구책임**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 **공동연구** : 공동연구원, 협동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연구** :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율은 정수만을 입력

(8) 타연구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1			yyyy.mm.dd		
			yyyy.mm.dd		
2			yyyy.mm.dd		
			yyyy.mm.dd		
3			yyyy.mm.dd		
			yyyy.mm.dd		
4			yyyy.mm.dd		
			yyyy.mm.dd		
5			yyyy.mm.dd		
			yyyy.mm.dd		
6			yyyy.mm.dd		
			yyyy.mm.dd		
7			yyyy.mm.dd		
			yyyy.mm.dd		
8			yyyy.mm.dd		
			yyyy.mm.dd		

※ 주관연구책임자가 본 과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기재함

※ 참여유형 (택1) : 연구책임, 공동연구

- **연구책임**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 **공동연구** : 공동연구원, 협동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개월수는 당해연도의 참여개월수를 기재하고, 참여율은 정수만을 입력

- ◎ 1.연구의 필요성~6. 연구인력양성계획까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 큰제목 14point, 소제목 12point, 본문내용은 10point로 작성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1. 연구의 필요성

가. 국내 · 외 연구동향 및 기존연구의 문제점

-
-
-

나. 관련 연구동향 및 독창성(창의성)

- 국내 · 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동향 및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독창성(창의성)

-
-
-

다. 연구과제의 중요성

- 예상되는 연구성과의 국제적인 수준을 고려한 본 연구과제의 중요성

-
-
-

2.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 작성요령

- 관련 연구주제가 추구하는 중 · 장기적인 궁극적 연구목적과 본 과제가 추구하는 최종 연구목표 및 연도별 연구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논문제재 등의 학술활동계획, 특히 등 지적재산권 출원계획, 연구조원 인력양성계획 등을 서술하고 제시된 표에 정량적인 내용을 건수 또는 인원수로 기재함.

○ 정성적 목표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비(백만원)
1차년도	YYYY			

○ 정량적 목표

구분	국외논문(편)		국내논문(편)		특허출원(건)	
	SCI(E)		SCI(E)		국외	국내
	주저자	공저자	주저자	공저자		
1차년도						

* 주저자 : 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 그 외 저자

나. 연구내용

□ 작성요령

-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타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에 대하여 강조하여 기술
- “가. 연구목표, 정성적목표”의 연구개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방법

□ 작성요령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등 연구수행체계와 목표달성을 가능성을 기술
- (해당시) 극지연구소의 인프라 및 자원활용방법 기술

○ 추진체계 (그림, 도표 등으로 표현)

“추진 체계도”
도표 또는 로드맵(그림) 활용

○ 수행방법

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작성요령

- 제안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선행한 예비 연구 데이터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원(시설 및 장비, 재료, 참여 연구진의 특성 등)에 대하여 기술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구책임자	연구 내용	비고
○	~			○	
○	~			○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 작성요령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추가연구, 기업화, 기술이전 등의 가능성 을 간략히 서술함

나. 기대효과

- 국내 극지연구에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해당분야 학문발전에의 기여효과
- 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구수행 과정을 통한 연구 인력 양성 효과 등

6. 연구비 집행계획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목	1차년도 예산	합 계
		YYYY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소계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 내부인건비계상기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기관 총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경우,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 교수 및 소속연구원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인정

* 간접비계상기준 : 비영리기관은 협약연도의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산출하며, 이때 총 연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인건비	천원
---------	----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지급구분
		소속부서명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연구 책임	홍길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연구비 총괄표의 내부인건비 지급/미지급에 계상한 참여인력을 입력함

* 자격 : 연구책임(국내 소속 이공학분야 대학(교) 교수(진임·비전임) 및 공공·연구소 연구원) 참여연구(박사급 연구원)

* 직급 (택1, 연구소 해당) : 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 학위 (택1) :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 채용예정 참여연구원 : 성명에 “미정” 혹은 “채용예정”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인원수만큼 “1”, “2”, “3”… 형태로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증가시켜 입력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지급구분
		소속부서명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참여 연구	홍길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연구비 총괄표의 외부인건비에 계상한 참여인력을 입력함,

※ 자격 (택1) : 참여연구(Post-Doc 또는 박사급 연구원)

 연구보조(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4학년생도 가능, 기타)

※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 줄 나누기로 추가할 수 있음

※ 외국인등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동일)를 기재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1)”, “외국인(2)”… 라고 기재

※ 채용예정 참여연구원 : 성명에 “미정” 혹은 “채용예정”으로 기재

(2) 직접비	천원
---------	----

(가) 연구시설 · 장비비

-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입고가 완료되어야 함
- *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 · 시설 · 공간에 대한 임차료 및 시료 · 장비 운반용 차량 임차료는 당초 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으면 원칙 불인정. 협약변경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 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은 원칙 불인정

① 기기 · 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0	

② 장비 · 시설 임차비, 유지 보수 및 운영비

구분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0	

* 구분 : 기자재유형, 택1(구입, 임차, 시설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000,000원

* 비고 : 장비 구매, 시설비 등 사용 사유

(나) 연구재료비

①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0	

* 구분 : 재료비 유형 택1 (시약, 부품, 소모품, 분석료 등)

* 비고 : 구매, 시설비 등 사용 사유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개재

② 시작품, 시작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 가공여부기재
합 계						0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과세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 必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기술정보수집비				
문현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회의장사용료, 개최비 등)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 단가는 해당기관의 연구비 편성 기준에 따름

주의 사항

※ 과세 대상 과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

- 연구개발비=공급가액(직접비+간접비)+매출부가세

- 공급가액=직접비+간접비

-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에 편성

◎ 해외 출장의 필요성(국외 여비 관련) ※ 국외출장 1건당 별도 표 작성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 목표와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출장기간		및 기관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 국외출장 1건당 별도 표 작성

활용 필요성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사업에의 관련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라) 연구수당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원		
합 계		0	

(3) 간접비

천원

※ 간접비 산출근거 : ○○○○○○○○원 × ○○% = ○○○○○○○원

※ 간접비계상기준 : 비영리기관은 협약연도의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산출하며, 이때 총 연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7. 극지 인프라 활용 계획

극지 인프라 활용 계획서			
1. 신청인		3. 연락처 (휴대폰) (e-mail)	
2. 소속 및 직위			
4. 활용 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세종과학기지 <input type="checkbox"/> 장보고과학기지 <input type="checkbox"/> 다산과학기지 <input type="checkbox"/> 쇄빙연구선(연구항차)			
※ ‘장보고과학기지’ 입·출을 위한 ‘쇄빙연구선’ 승선의 경우 ‘장보고과학기지’에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5. 활용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명- 주요 내용			
6. 총 참여인원	명	7. 활용 희망시기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8. 인프라 활용 시 지원 요청사항			
※ 지원필요 장비 및 시간			
<input type="checkbox"/> 고무보트(시간) <input type="checkbox"/> 설상차(시간) <input type="checkbox"/> 중장비(시간) <input type="checkbox"/> 헬기(시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간)			
상기와 같이 극지 인프라 활용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극지연구소장 귀하			

* 극지 인프라 활용 계획서는 인프라운영부서의 검토 후 활용가능 여부 별도 통보 예정

별첨 5 [양식] 연구수행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협약 해약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 하여 주십시오.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오 (결격사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협약해약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주관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연구수행 전념> ✓ 주관 연구책임자(협동, 공동, 위탁 포함)는 연구수행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계획(연구연가, 교육훈련, 출장, 파견 등)이 없습니까?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협약해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비 환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신청주관기관장 : 직인

〈 신청자격 확인서 〉

본 과제책임자는 신청일 현재 신청제한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극지연구소의 규정” 및 “사업
공고문”에 따라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과제책임자) : (인)

신청주관기관장 : 직인